G - 37 - 2012

근로자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에 관한 지침

2012.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대한기계학회 서상호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 제·개정 경과

- 2010년 8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2년 5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관련규격 및 자료

- Health Surveillance at Work, HSE, 1999

- 산업안전보건용어사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6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2년 5월 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G - 37 - 2012

근로자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근로자의 작업상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요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일반적이지만 필요한 건강관리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건강관리의 조사 시기와 횟수

(1) 시기

건강관리는 건강 유해위험요소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따라서 작업과정 전반에 상존하는 건강장해 요소를 찾아내어 근로자가 이에 노출되지 않도록하고, 그 유해인자를 제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그러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

(2) 횟수

건강관리는 유해인자가 상존하는 한 지속되어야 하며 그 노출정도에 따라 점검 및 조사 횟수와 기간을 조절하여야 한다. 관련된 법규나 고시 또는 지침

G - 37 - 2012

등에 따라 조사 횟수를 정하여야 하고 사업장 자체 기준은 법적 기준 이상 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건강관리 업무와 절차

건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1) 목적을 명확히 한다.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2)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를 포함시켜 상호 신뢰를 구축한다.

근로자가 그 목적과 실행 방법 그리고 효과 등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면 건강관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주 등은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 건강관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선행함으로써 공감을 이루어야 한다.

(3)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적합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가장 적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유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업적 안전보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작업과정의 형태와 범주를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4) 역할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을 관리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안전보건 전문가는 그 목적과 절차 등을 숙지하고 있는 경 험자로서 실행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는 계속적인 전문적 훈련 을 통해 요구되는 자질을 보유해야 한다.

(가) 자기 점검

유해인자에 직접 노출되어 있고 질병의 징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자기 점검을 통해 이 사실을 즉시 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G - 37 - 2012

(나) 유해요소 확인

유해위험물질 혹은 작업 과정상 유발되는 직접적인 유해위험요소 확인은 관리감독자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 조사

유해인자 및 발생 징후에 대한 검사 혹은 조사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게 한다.

(라) 건강관리

의학적 검사는 반드시 산업보건 의사에 의해 수행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결과에 대한 설명과 관련 질병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조언도 의사가 하여야 한다.

(마) 생물학적 모니터링

산업보건 의사는 생물학적 모니터링과 그 결과의 실행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바) 병리학적 모니터링

산업보건 의사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및 산업심리 등을 고려한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사) 결과의 기록 및 조치

건강관리의 결과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실행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

- ① 건강관리 결과에 따라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여 위해를 사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특히 질병에 민감하거나 이미 영향을 받은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 ② 기존의 유해도 평가를 재검토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 ③ 건강관리 결과에 대한 평가는 그 프로그램 책임자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근로자 개인의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G - 37 - 2012

충분히 설명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도록 해야 한다.

(사) 건강기록의 작성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는 개인별 건강기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물질 및 과정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에 대한 기록사 항이며, 근로자의 작업 적합성과 제한사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절차의 이 력을 포함하는 결과의 기록이다. 또한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과 기록은 사 생활 보호를 위해 비밀이 보장되도록 철저한 보안유지를 준수하여야한다.

- ① 이름
- ② 성별
-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주소지
- ⑤ 현 작업 시작 일시
- ⑥ 현 작업에서 유해위험요소에 노출되었던 기록
- ⑦ 건강관리 조사 결과와 일시

여기에는 전문가 및 의사 등이 조치한 개인별 조언과 사후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건강기록은 근로자가 건강관리를 받는 한, 그리고 유해위험요소 노출 후 오랜 기간 질병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기간까지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건강기록은 근로자에게 열람시켜 그 내용을 알도록 해야 한다.